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관계부처 합동	<h1>보도자료</h1>	2016. 2. 25(목)	
		작 성 문 의	국무조정실 녹색기획협력과 과장 김형수 / 사무관 정지운 (Tel. 044-200-2880)
엠바고	즉시 사용		
※ 관계부처: 기재부 미래정책총괄과장 김재훈(044-215-4910), 미래부 원천기술과 사무관 이병희(02-2110-2384), 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장 권세중(02-2100-8427), 농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과장 김정욱(044-201-2411), 산업부 온실가스감축팀장 송현주(044-203-5370),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장 오일영(044-201-6950), 국토부 미래전략담당관 윤영중(044-201-3258)			

파리협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

< 주요 개편방안 >

- ◆ 총리실이 기후변화 대응 컨트롤타워 담당, 소관분야별 관장부처 책임제
- ◆ 금년 중 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(37%) 추진을 위한 로드맵 마련
- ◆ 시장기술 중심의 감축수단을 적극 활용, 신산업 창출의 전기 마련
- ◆ 녹색 생활문화 확산, 지자체 녹색생활 컨설팅 강화

□ 정부는 2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「기후변화대응체계 개편방안」을 마련하여 녹색성장위원회(위원장 국무총리, 이지순 서울대교수) 심의*를 거쳐 확정하였다

○ '15년 12월 파리협정 채택으로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참여가 의무화됨에 따라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,

-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의 기회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.

* 민간위원 21인, 기재부·산업부·환경부 장관 등 정부위원 17인 (총 38인)

- 이에 따라 우리의 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(37%)의 효과적 달성과 新기후체제 하에서의 신산업 육성, 국제탄소시장을 선점하기 위해
 -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투자여건이 신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재정투자와 법·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
 - 기후변화 담당 부처간 효율적 역할 분담을 통해 각 부처 역량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 대응체계를 개편해 나갈 것이다.

□ 이번에 마련된 기후변화 대응체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

①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, 소관 분야는 각 부처에게 책임을 두는 관장부처 책임제를 도입한다.

- 국조실이 장기 감축목표에 따라 부문별 감축목표를 정해 주면, 각 부처는 이를 기초로 세부 목표를 정하고 필요한 정책개발과 감축이행까지 책임지는 것이다.

- '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'는 국무조정실 산하로 이관하여 각 소관 부처가 공동 활용하고, 이들 부처의 정책수립을 지원하게 된다.

- 「관장부처 책임제」의 취지에 맞추어 기획재정부가 배출권 시장 활성화 등 배출권거래제 운영의 총괄 책임을 지고, 산업, 농림, 환경, 국토부의 4개 관장부처가 소관 분야를 책임지게 된다.

- 아울러 소관부처와 환경부가 '배출량(외부사업) 인증 협의'를 하는 절차를 두어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.

- 또한 환경부의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기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내외적 주요 업무(목표관리제 총괄, COP 수석대표)를 수행한다.

② 금년중 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(37%)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

- '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(16년 예정)'과 '2050년 장기 저탄소발전 전략(17년 예정)'을 수립하여 우리나라가 저탄소사회로 나가는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기로 하였다.

③ 시장·기술 중심의 감축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이 되는 신산업 창출의 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.

- 금년중 「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」을 통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,

- 「1조원 규모의 신산업 투자펀드 조성」 등 기후금융을 확대 하고, 계절·시간대별 차등요금제 확대, 스마트그리드의 확산 등도 추진해 나간다.

- 에너지 R&D 투자(현재 1.5조원 수준)를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하고 핵심 청정에너지 투자규모를 5년내 2배로 확대 노력하는 한편, 10대 기후기술* 개발에 집중하고, 탄소자원화 전략을 마련한다.

- * 현재 도심형 태양광 발전, 연료전지를 활용한 저탄소 에너지 도시 등이 선정되었으며 금년말까지 8개를 추가 발굴하여 사업화 모델 확정 예정

- 배출권거래제가 저탄소 경제구조 전환 유도기능을 수행하도록 업종간 편차개선을 위한 할당계획 보완, 조기감축실적 인정범위 확대, 해외감축 실적인정 등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.

④ 지자체의 녹색정책 컨설팅을 강화하고 녹색생활 문화를 확산 하여 중앙정부, 시민, 지자체가 삼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정책 노력도 강화한다.

- 환경부가 지자체의 녹색계획에 대한 컨설팅과 이행 점검 등을 지원하는 한편,
 - 산림, 해양 등 탄소흡수원의 적극적 보전, 저탄소 녹색도시 모델 개발, 녹색건축물 확대, 녹색소비 확산사례의 보급 등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.
- 금번 기후변화 대응체계 개편방안은 파리협정 채택이후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체계적인 후속조치를 발표하는 것으로서,
- 제도개편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‘녹색성장기본법,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’을 입법예고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,
 - 앞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공조에 동참하는 한편, 저탄소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을 지속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.

※ 붙임 1 : 기후변화대응체계 주요 개편방향

※ 붙임 2 : 기후변화대응전략 개요

붙임 1

기후변화대응체계 주요 개편방향

	현 행	개 편
온실가스 감축정책 총괄·조정	환경부	범부처 참여 총력체계 (국무조정실 총괄/ 부문별 소관부처 책임제)
배출권 거래제 운영	기재부 총괄/ 환경부 운영	기재부 총괄 강화/ 4개 관장부처 운영 (국토, 농림, 산업, 환경) * 환경부 인증전 협의
중장기 전략 수립	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(20년 감축목표 기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(30년 감축목표 기준) ·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· 2050 저탄소 발전전략
온실가스 감축수단	규제 중심	시장·기술·R&D 병행
지자체· 시민사회 협력	형식적 관리	실질적 협력 (환경부 주관, 부처 협조)

□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('17년 예정)

- (개요) 미래 저탄소 사회 비전과 발전전략 제시
 - 경제, 사회,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화석연료 의존에서 탈피하여 저탄소 이행을 위한 장기전략 제시
- (추진체계) 국무조정실·환경부 주관 하에 관계부처 참여

□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('16년 예정)

- (개요) 향후 20년간 기후변화 경향 분석 및 부문별·시기별 대책 수립
 - 기후변화의 감시·예측·취약성 평가, 인력양성, 연구개발 및 재난방지 등을 포함
- (추진체계)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관계부처 참여

□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('16년 예정)

- (개요) 분야별, 시기별 감축목표 설정 및 관리
- (추진체계)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관계부처 참여

□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 추진계획 지원 강화

- (개요) 국가 목표와 연계하여 지자체별 지역여건에 맞는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 강화
- (추진체계)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립하되, 환경부가 컨설팅과 이행 점검 등 환류기능(Feed-back) 지원